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                           |                  |
|-----------------------------------------------------------------------------------|---------------------------|------------------|
|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20959  | www.congcaphe.kr |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2-09-19 |                  |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4-15 |                  |

## [콩카페(CongCaphe)]

###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그린에그에프엔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

### (주)그린에그에프엔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 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2-6952-5520 / FAX : 02-6020-855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 02-2263-552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 (주)그린에그<br>에프엔비 | 콩카페<br>(Cong Caphe)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2018.4.18           | 2018.4.23.             | 신성일         | 02-6952-5520 | 02-2263-5550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6725547         | 사업자<br>등록번호 | 773-88-00839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이사 | 신성일   | 콩카페<br>(Cong Caphe)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성일                    | 02-2263-5520 | -      |
| 사내이사 | 조성빈   | 콩카페<br>(Cong Caphe)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성일                    | 02-2263-5520 | -      |
| 이사   | 정경인   | 콩카페<br>(Cong Caphe)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성일                    | 02-2263-5520 | -      |
| 사외이사 | 박성철   | 콩카페<br>(Cong Caphe)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성일                    | 02-2263-5520 | -      |
| 감사   | 최영석   | 콩카페<br>(Cong Caphe)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8층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성일                    | 02-2263-5520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 가 설 명          |
|-------------|------------------------------------------------------------------------------------|------------------|
| 명 칭         | 콩카페(Cong Caphe)                                                                    | /                |
| 상 호         | [콩카페(Cong Caphe)] ( )점                                                             | /                |
| 상 표(서비스표) 1 |   | 등록번호: 40-1656527 |
| 상 표(서비스표) 2 |  | 등록번호: 40-1707090 |
| 그 밖의 영업표지   | “해당 없음”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1,831,223 | 2,564,945 | -733,722   | 1,596,551 | -1,259,713 | -1,332,539 |
| 2022년 | 1,184,597 | 3,192,266 | -2,007,669 | 1,445,666 | -1,272,637 | -1,273,947 |
| 2023년 | 1,769,436 | 2,946,825 | -1,177,388 | 4,547,070 | -300,987   | -369,719   |

※ 상기 매출액은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2022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합산한 매출액입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 (주)그린에그에프엔비 현 임원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br>관련여부 | 성명  | 현직위         | 사업경력                                                            |                  |       |
|--------------|-----|-------------|-----------------------------------------------------------------|------------------|-------|
|              |     |             | 사업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관련           | 신성일 | 대표이사        | 2025. 02.21. ~ 현재                                               | 대표이사             | 사업 총괄 |
| 관련           | 조성빈 | 사외이사        | 2018. 9. ~ 2019. 9.<br>2019. 9. ~ 2025.02.20.<br>2025.02.21.~현재 | 상무<br>대표이사<br>이사 | 지원    |
| 비관련          | 정경인 | 기타비상무<br>이사 | 2023.01. ~ 현재                                                   | 이사               | 지원    |
| 비관련          | 박성철 | 사외이사        | 2019. 9 ~ 현재                                                    | 이사               | 지원    |
| 비관련          | 최영석 | 감사          | 2021. 3 ~ 현재                                                    | 감사               | 감사업무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시점        | 임원수 |     | 직원수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말 기준 | 1   | 3   | 1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바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일자 및<br>등록신청여부   | 출원번호 및<br>등록번호        | 소유자               | 등록만료일<br>(사용허용기간) |
|-----------------------------------------------------------------------------------|-----------------------|--------------------|-----------------------|-------------------|-------------------|
|  | 당사에서<br>부여한<br>상표 사용권 | 출원일자<br>2019.10.02 | 출원번호<br>4016565270000 | 콩카페<br>컴퍼니<br>엘티디 | 등록 후 10년          |
|                                                                                   |                       | 등록일자<br>2020.10.28 | 등록번호<br>4016565270000 |                   |                   |
|  | 당사에서<br>부여한<br>상표 사용권 | 출원일자<br>2020.04.02 | 출원번호<br>4020200055355 | 콩카페<br>컴퍼니<br>엘티디 | 등록 후 10년          |
|                                                                                   |                       | 등록일자<br>2021.03.23 | 등록번호<br>4017070900000 |                   |                   |

⇒ [콩카페(Cong Caphe)]의 상표권은 콩카페 컴퍼니 엘티디의 소유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어 사용기간을 본 상표의 존속기간 내로 설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표 출원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이외의 범위에서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2년 10월 7일입니다. (가맹1호점인 콩카페 부산광안리점의 첫 영업일입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년 7월 28일)

### 2. 가맹사업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이름 | 가맹사업<br>경영기간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주)그린에그에프엔비 | 콩카페<br>(Cong Caphe) | 조성빈    | 2019.9. ~ 2025.02.20.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br>성우빌딩 8층 |
| (주)그린에그에프엔비 | 콩카페<br>(Cong Caphe) | 신성일    | 2025. 02.21. ~ 현재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br>성우빌딩 8층 |

### 3.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주)그린에그에프엔비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커피  | 코코넛스무디커피, 코코넛연유커피,<br>비나카노, 반미, 분짜 등 |

###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5           | 0    | 5    | 6           | 1    | 5    | 18          | 14   | 4    |
| 서울 | 4           | 0    | 4    | 4           | 0    | 4    | 4           | 1    | 3    |
| 부산 | 0           | 0    | 0    | 1           | 1    | 0    | 1           | 7    | -    |
| 대구 | -           | -    | -    | -           | -    | -    | -           | 2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1 | 0 | 1 | 1 | 0 | 1 | 1 | 3 | 1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1 | 1 | 0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 -     | -  |
| 2022 | -  | 1     | -     | -     | -     | 1  |
| 2023 | 1  | 13    | -     | -     | -     | 14 |

## 6. 당사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 (주)그린에그에프엔비는 [콩카페(Cong Caphe)]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 지역 | 2023년말<br>가맹점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원, 부가세 제외)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br>(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br>(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m <sup>2</sup> 당 | 상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하한                | 면적<br>3.3m <sup>2</sup><br>당 |       |
| 전체 | 14             | 510,932                                | 12,805                    | 944,775           | 47,238                    | 232,967           | 4,322                        | 7곳산출  |
| 서울 | 1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부산 | 7              | 570,553                                | 16,722                    | 944,775           | 47,238                    | 232,967           | 8,162                        | 4곳산출  |
| 대구 | 2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3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강원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1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콩카페(Cong Caphe)]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14         | 199(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br>(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2023년 | 80394                      | 80394 | -   |    |
| 광고 |    |       | 10143                      | 10143 | -   |    |
| 판촉 |    |       | 70251                      | 70251 | -   |    |

※ 당사의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11. 가맹금 예치제도

당사는 콩카페(Cong Caphe)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가맹금 예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주)                                                       |           |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 (주)그린에그에프엔비                                                      | 가맹본부      |
|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
| 보험금액        |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평균 5개월 소요 |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바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콩카페(Cong Caph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지 급 대 상       | 예치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불가 사유               | 비고            |
|-----|--------|-----------|-----------------------------------------|-----------------------|---------------|
| 총계  | 17,600 |           |                                         |                       |               |
| 가맹비 | 11,000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br>해약시<br>위약금과<br>상계처리 후<br>반환 | 가맹점 오픈<br>이후<br>반환 안됨 | 가맹비는<br>소멸성임  |
| 교육비 | 6,600  | -         | -                                       | -                     | 가맹점주<br>1인 기준 |

※ 가맹비는 가입비(전체 가맹비의 50%),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및 노하우 전수(전체 가맹비의 50%)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최초 개설 교육을 위한 대가입니다.

교육비는 당사의 [콩카페(Cong Caph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해당없음)

| 구분              | 금액        |           | 지급<br>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br>없는 사유              | 비고                                                      |
|-----------------|-----------|-----------|---------------------|------------------------------------------------------|-----------------------------|---------------------------------------------------------|
|                 | 20평<br>이하 | 20평<br>이상 |                     |                                                      |                             |                                                         |
| 계약<br>이행<br>보증금 | 3,000     | 5,000     | 계약<br>체결<br>후<br>즉시 | 계약종료일로부터<br>30일 이내에 잔존<br>채무와 손해배상<br>액을 정산 후 반<br>환 | 미납채무 및 손<br>해배상액이 있<br>는 경우 | 가맹계약상의 미이행 채<br>무 또는 손해배상액의<br>지급을 담보하기 위하<br>여 제공하는 금액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단위:천원/부가세포함) |                |
|---------|------------------|----------------|
|         | 66㎡, 20평<br>이하   | 66㎡, 20평<br>초과 |
| 합 계     | 20,600           | 22,600         |
| 가맹비     | 11,000           | 11,000         |
| 교육비     | 6,600            | 6,600          |
| 계약이행보증금 | 3,000            | 5,000          |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33㎡ 기준)

| 구 분     | 지급<br>대상 | 금액        |           | 면적 3.3㎡당<br>금액 |           | 지급<br>기한                   | 반환<br>조건          | 비 고 |
|---------|----------|-----------|-----------|----------------|-----------|----------------------------|-------------------|-----|
|         |          | 10평<br>기준 | 20평<br>기준 | 10평<br>기준      | 20평<br>기준 |                            |                   |     |
| 디자인비    | 가맹본부     | 2,200     | 3,300     |                |           | 착공시                        |                   |     |
| 인테리어    | 가맹본부     | 30,800    | 58,300    | 3,080          | 2,915     | 착공시50%<br>중도금30%<br>완공시20% | 공사발주<br>전<br>계약해지 |     |
| 간판,사인물  | 가맹본부     | 6,600     | 6,600     | 660            | 330       | 착공시50%<br>중도금30%<br>완공시20% | 공사발주<br>전<br>계약해지 |     |
| 주방설비류   | 가맹본부     | 36,300    | 36,300    | 3,630          | 1,815     | 착공시50%<br>완공시50%           | 공사발주<br>전<br>계약해지 |     |
| 가구,데코물품 | 가맹본부     | 11,000    | 22,000    | 1,100          | 1,100     | 착공시50%<br>완공시50%           | 발주 전<br>계약해지      |     |

|         |      |        |         |       |       |       |              |              |
|---------|------|--------|---------|-------|-------|-------|--------------|--------------|
| 주방기물,비품 | 가맹본부 | 2,200  | 3,300   |       |       | 공급5일전 | 발주 전<br>계약해지 |              |
| 전산시스템   | 가맹본부 | 3,300  | 3,300   |       |       | 착공시   | 발주 전<br>계약해지 | 포스<br>무인키오스크 |
| 오픈 판촉비  | 가맹본부 | 2,200  | 2,200   |       |       | 착공시   | 개점전<br>계약해지  | 소요비용<br>제외   |
| 초도물품비   | 가맹본부 | 2,200  | 2,200   |       |       | 공급5일전 |              |              |
| 합계      |      | 96,800 | 137,500 | 9,680 | 6,875 |       |              |              |

| 구 분     | 지급<br>대상 | 금액        |           | 면적 3.3㎡당<br>금액 |           | 지급<br>기한                   | 반환<br>조건          | 비 고          |
|---------|----------|-----------|-----------|----------------|-----------|----------------------------|-------------------|--------------|
|         |          | 30평<br>기준 | 40평<br>기준 | 10평<br>기준      | 20평<br>기준 |                            |                   |              |
| 디자인비    | 가맹본부     | 4,400     | 5,500     |                |           | 착공시                        |                   |              |
| 인테리어    | 가맹본부     | 82,500    | 110,000   | 2,750          | 2,750     | 착공시50%<br>중도금30%<br>완공시20% | 공사발주<br>전<br>계약해지 |              |
| 간판,사인물  | 가맹본부     | 8,800     | 11,000    | 293            | 275       | 착공시50%<br>중도금30%<br>완공시20% | 공사발주<br>전<br>계약해지 |              |
| 주방설비류   | 가맹본부     | 40,700    | 40,700    | 1,357          | 1,018     | 착공시50%<br>완공시50%           | 공사발주<br>전<br>계약해지 |              |
| 가구,데코물품 | 가맹본부     | 26,400    | 33,000    | 880            | 825       | 착공시50%<br>완공시50%           | 발주 전<br>계약해지      |              |
| 주방기물,비품 | 가맹본부     | 3,850     | 5,500     |                |           | 공급5일전                      | 발주 전<br>계약해지      |              |
| 전산시스템   | 가맹본부     | 3,300     | 3,300     |                |           | 착공시                        | 발주 전<br>계약해지      | 포스<br>무인키오스크 |
| 오픈 판촉비  | 가맹본부     | 2,750     | 3,300     |                |           | 착공시                        | 개점전<br>계약해지       | 소요비용<br>제외   |
| 초도물품비   | 가맹본부     | 3,300     | 3,300     |                |           | 공급5일전                      |                   |              |
| 합계      |          | 176,000   | 215,600   | 5,867          | 5,390     |                            |                   |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철거공사, 전기/가스 증설, 냉난방기공사, 익스테리어, 폴딩도어(접이식 창호), 매장 내 화장실 공사, CCTV(방범), 소방설비 및 스프링쿨러, 음향 장비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자체 시공, 조달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를 가맹본부(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디자인비 외에 설계비 및 시방서 제공비용으로 3.3㎡당 [550]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가맹점 입지 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의 주체 | 입지 선정의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p>1)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 업체에 의뢰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p> <p>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 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고,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p>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채용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당사의 기업 가치와 브랜드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콩카페(Cong Caphe)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매월 말일 POS기준<br>실매출액 2.2%       | 매월<br>청구일               | 반환되지<br>않음                         |             |                                                         |
| 경영 지도비                           | 가맹본부                | 실 매출액의<br>4.4% (최소<br>110만원부터) | 매월<br>청구일               | 반환되지<br>않음                         |             | 가맹본부에<br>운영 위탁 시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광고분담금<br>기준에 따름                | 매월<br>청구일               | 분담금 납부<br>후 1년간<br>광고를 하지<br>않은 경우 |             | V-8 참조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판촉 분담금<br>기준에 따름               |                         | 판촉분담금 납부<br>후 실시하지<br>않은 경우        |             | V-8 참조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교육시 협의                         | 교육 실시<br>3일전            | 교육비 납부 후<br>실시하지 않은<br>경우          |             |                                                         |
| 인테리어<br>시설, 각종<br>기기의<br>교체 보수비용 | 가맹본부<br>또는<br>지정 업체 | 공사 내용에<br>따라 협의                | 교체, 보수<br>공사 전<br>3일 이내 | 반환되지<br>않음                         |             | 교체, 보수 필요시<br>시설, 기기 등<br>내구연수 등을<br>감안하여 당사<br>협의하여 결정 |
| POS 사용료                          | 협력업체                | 해당 업체<br>기준에 따름                | 매월 청구일                  | 반환되지<br>않음                         |             |                                                         |

\* 당사의 광고분담금, 판촉분담금, 교육훈련비(최초 교육 이후 메뉴, 운영 교육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교육훈련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의 가맹점에는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관계로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연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작성 →가맹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부정기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 방문 → 주 문→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완료        | 수시/부정기 |
| 품질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가맹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부정기 |
|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 POS자료 검토 또는 현장 방문 → 가맹점 재고관리 및 회계 처리 현황 파악     | 수시/부정기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상품, 서비스 관리 등을 포함한 가맹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 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콩카페(Cong Caphe)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신규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 및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 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 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바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콩카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코코넛스무디커피,<br>코코넛라이스스무디,<br>비나카노, 반미 샌드위치 등<br>가맹점에<br>공지하는 메뉴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br>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br>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 ② 귀하가 위 표 및 (별첨 3)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타 가맹사업자              | 당사 및 당사의<br>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br>상품, 제품 및 레시피 | 지정 거래상대방에게<br>해당 제품 판매 불가 |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br>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베트남식 음료와<br>식품 판매사업자 |                                          |                           |                                                       |    |
| 미성년자                 | 주류                                       | 미성년자에게는<br>주류 판매를 금지      |                                                       |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①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3)콩카페(Cong Caphe) 기본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② 귀하가 별첨 3)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

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sup>①</sup>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커피 전문점                 | 콩카페(Cong Caphe) | 해당 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입점 당시 해당 범위 내 특수 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상권으로 분리</li> <li>- 물리적 배달 지역 외에 배달 대행업체 표시되는 배달 가능 지역</li> </ul> | 계약시 협의에 의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br>→ 당사 담당팀 검토<br>→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br>→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br>→ 가맹점사업자 동의<br>→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br>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콩카페(Cong Caphe)'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콩카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온라인 | 쿠팡            | coupang.com     | 코코넛연유커피 12개입 | 동일제품     |
|     |               |                 | 연유 커피 12개입   | 동일제품     |
|     |               |                 | 비나카노 블랙 5개입  | 동일제품     |
|     |               |                 | 시그니처 머그컵     | 동일제품     |
|     | SSG           | ssg.com         | 코코넛연유커피 12개입 | 동일제품     |
|     |               |                 | 연유 커피 12개입   | 동일제품     |
|     |               |                 | 비나카노 블랙 5개입  | 동일제품     |
|     |               |                 | 시그니처 머그컵     | 동일제품     |
|     | 네이버<br>스마트스토어 | store.naver.com | 코코넛연유커피 12개입 | 동일제품     |
|     |               |                 | 연유 커피 12개입   | 동일제품     |
|     |               |                 | 비나카노 블랙 5개입  | 동일제품     |
|     |               |                 | 시그니처 머그컵     | 동일제품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2023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62%                   | 28%     | 5%            | 4%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사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br>(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br>(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8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① 귀하가 영업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13조 1항  |
| ② 귀하가 당사에 대한 상품 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및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

|                                                                               |  |
|-------------------------------------------------------------------------------|--|
| ③ 귀하가 영업 비밀 유지,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
| ④ 귀하가 지정된 영업 장소 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경우                                             |  |
| ⑤ 귀하가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원부자재 이외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  |
| ⑥ 귀하가 당사의 영업 표지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  |
| ⑦ 귀하가 당사의 주요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 ⑧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 ⑨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또는 Off-Line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
| ⑩ 귀하가 당사와 동종 경쟁업종의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
| ⑪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 보전 경우 제외), 조세체납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
| ⑫ 귀하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2기 이상 미납한 경우                                           |  |
| ⑬ 가맹 계약에 기하여 당사에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li> <li>◆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li> <li>◆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li> <li>나.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li> <li>다.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li> </ul> </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 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li> </ul> | 13조 2항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37조     |
| ②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의 상속 통지→상속인의 자격 검토(상속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교육, 훈련 등 → 영업 상속 절차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시 가능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1)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콩카페(Cong Caphe)]**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사업을 경영하거나 투자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 고 |
|-----------------------------------------------|---------|-----|
| 일반인에게 커피, 음료, 및 이에 부수하는 디저트, 베트남식 음식을 제공하는 업종 | "해당 없음"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 고             |
|---------------------|------------------------------------------------------|-----------------|
| 10:30 ~ 22:30(12시간) | 매월 26일 (2월은 24일) 이상 매장을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점포 여건에 따라 협의 가능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
| 3명 이상   | 자율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부정기  | 본사<br>운영팀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수시/부정기  | 본사<br>운영팀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부정기  | 본사<br>운영팀 |
| 복장과 용모   | 담당자 매장 방문 → 복장과 용모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부정기  | 본사<br>운영팀 |
| 회계 자료    |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 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부정기  | 본사<br>운영팀 |
| 정기 회의    | 담당자 회의 공지 → 회의 자료 작성(매장 및 본사) → 회의 진행 → 회의 시 실행 사항 실시 → 수시 점검 → 완료 | 수시/부정기  | 본사<br>운영팀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① 당사는 콩카페(Cong Caphe) 영업 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sup>④</sup>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 광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 50% 중 가맹점매출규모에 따라 분담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 분담액 명세서 통지 → 가맹점 불참 시 사유 서면제출 및 가맹본부 승인 →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예측 → 광고에 집행된 비용 배분 징구 → 매월 정해진 기일에 납부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시 진행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 행사    | 할인 행사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증정 행사    | 증정상품 출하가 50%    | 증정상품 출하가 50%             | "                                                                                                         | "                                              |
|          | 팸플렛 등 제작 | 판촉물 제작비용 50%    | 판촉물 제작비용 50%             | "                                                                                                         | "                                              |
|          | 기타 개별 행사 |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 "                                              |

②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이 시행 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 일체는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①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집행내역 통보 내용                                                       |
|------------------------------------------------------------------|
|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②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0.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 관련 계약조문 |
|--------------|---------|
|--------------|---------|

|                                                                                                                                                                                                   |     |
|---------------------------------------------------------------------------------------------------------------------------------------------------------------------------------------------------|-----|
| ① 귀하가 계약 기간 중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 기간 만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계약의 이행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 상의 비밀이나 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등 영업 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함 | 32조 |
| ② 귀하가 계약이 종료에 따른 각종 의무(운영 중단,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 중단 및 이에 대한 철거, 운영 매뉴얼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일체의 자료 반납 등 상세한 내용은 가맹 계약서 42조 참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1일당 위약금 500,000원을 지급해야 함            | "   |
| ③ 당사의 귀책 사유 없이 귀하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함                                                                                                                                            | "   |
| ④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상해야 함                                                                                                   | "   |
| ⑤ 귀하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   |
| ⑥ 귀하가 당사의 사전 허가없이 자점매입을 한 경우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   |
| ⑦ 귀하가 귀하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1개월당 위약금 금오십오만원에 계약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함                                                                                                                         | "   |
| ⑧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함                 | "   |
| ⑨ 본 계약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연 15%로 함                                                                                                                       | 33조 |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 비요                                                  |
|-------------------|----------------------------------------------------------|----------------|--------------------------------------------------------|
| 합계                |                                                          | 50일 내외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즉시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 체결<br>14일 전 |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계약 약 1일전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예치가맹금 납부                                         |                |                                                        |
| 보증보험가입            | - 보증 보험 가입                                               | 체결 후 약 3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37           |                                                        |
| 실내외공사 내역 확정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7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0           |                                                        |
| 가구 및 인테리어 물품      | - 베트남 현지 수입 물품 배치                                        | D-5            |                                                        |
| 장비 및 초도물품         | - 장비 설치 및 초도 물품 입고                                       | D-3            |                                                        |
| 교육 실시             | - 본사/기존 매장/현장 교육                                         | D-10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길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담비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환경<br>개선사유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항목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비율                                                      | 지급 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비<br>고 |
|------------------------------------------------------------------------------------------------------|----------------------------------------------------------------------------------------------------------------------|-------------------------------------------------------------------------|----------------------------------------------------------------------------------------------------------------------------------------------------------------------------------------------------------------------------------------------------------------------------------------------------------------------------------------------------------------------------------------------------------------------------------------------------|------------------------------------------------------------------------------------------------------------------------|--------|
| <p>○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 노후화가 관적으로 정되는 경우</p> <p>○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하시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p> | <p>○간판 교체 비용</p> <p>○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장비, 기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용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단, 가맹점사업자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p> | <p>○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점포 환경개선 : 20%</p> <p>○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점포 환경개선 : 40%</p> |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할지급 가능)</p>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p> <p>&lt;분할지급 시 절차&gt;<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 <p>○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p> |        |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시 특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br>통일성 및 독창성 유지에<br>대한 지도<br><br>2.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br>등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br>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br>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br>가맹점에 방문하거나<br>유선상으로 관련된<br>지도를 할 수 있음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본사 운영팀<br>(02-6952-5520) |
| 가맹점<br>사업자<br>요청 시 | 3.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br>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br>가맹점의 운영 방안 지도<br><br>4.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br>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 방<br>안 지도 |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br>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br>지도를 위한 방법 및 기<br>정을 안내하고 이를<br>자가 동의하면 진행함            | 가맹점부담<br>(가맹금에<br>포함된<br>통상의<br>경영지도비용<br>을 초과한<br>부분에 한함) | 문의:<br>본사 운영팀<br>(02-6952-5520)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②     |
|-------|----------------------------------------------------------------|----------------|---------------------|---------|
| 신규 교육 | - 회사 소개 교육<br>- 서비스 교육<br>- 레시피 교육<br>- 현장 실습 교육<br>- 매장 운영 교육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br>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 신메뉴 교육<br>- 마케팅 교육<br>- 판매 촉진 방안 등                           | 별도 교육 계획<br>제공 |                     | 필요 시 수행 |
| 특별 교육 | - 필요한 부분을 파악 후 해당<br>부분 중점 교육                                  | 별도 교육 계획<br>제공 |                     | 필요 시 수행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br>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6일      | 6,600                 | 최초 계약시 이수<br>교육 이수 후 오픈 |
| 보수 교육 | 협의 후 결정 | 별도 교육 계획 제공           | 필요 시 수행                 |
| 특별 교육 | 협의 후 결정 | 별도 교육 계획 제공           | 필요 시 수행                 |

보수 교육과 특별 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 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 수준입니다. 단, 상기의 교육훈련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서울 | 연남점  |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61-14, 1층(연남동)                   |
| 2  | 서울 | 이태원점 |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68-8, 1,2층(이태원동)                |
| 3  | 경기 | 판교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B1층(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
| 4  | 서울 | 잠실점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지하1층 (잠실동)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4년 2개월(약 62개월)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부가세 제외, 단위: 천원)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290,775              | 당사의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별첨 1. [제무재표/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공급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콩카페 기본메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                               |               |  |
|-------------|-------------------------------|---------------|--|
| 가맹본부<br>회사명 |                               | 영업표지<br>(브랜드) |  |
| 제공확인        |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 (작성 란) :                      |               |  |
| 제공일시        | 년 월 일 시                       | 제공받은<br>장소    |  |
|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                               |               |  |
| 주소          |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별첨5.[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 No.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 \_\_\_\_\_ ] 대표 \_\_\_\_\_(인)

가맹희망자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